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3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.

발 의 자:진선미·박상혁·문진석

조오섭・진성준・천준호

허 영・김윤덕・소병훈

박영순 · 김교흥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, 지원대상자의 사망, 주소지 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지

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,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효율적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(안 제30조제3항)

- 1)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 현황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관련 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 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
- 2) 지원대상자의 사망, 주소지 이전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업무 수행을 도모
- 나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 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(안 제40조제2항 신설)

법률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행정안전부장관
- 2. 보건복지부장관
- 3. 여성가족부장관

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)	제30조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	③
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	
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	
을 요청하고 수집·이용할 수	
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	
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	
제공하여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1. 행정안전부장관
<u><신 설></u>	2. 보건복지부장관
<u><신 설></u>	3. 여성가족부장관
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	$4. \sim 6.$ (현행 제 1 호부터 제 3
	호까지와 같음)
제40조(압류 등의 금지) (생 략)	제40조(압류 등의 금지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
	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
	<u>수 없다.</u>